붙임1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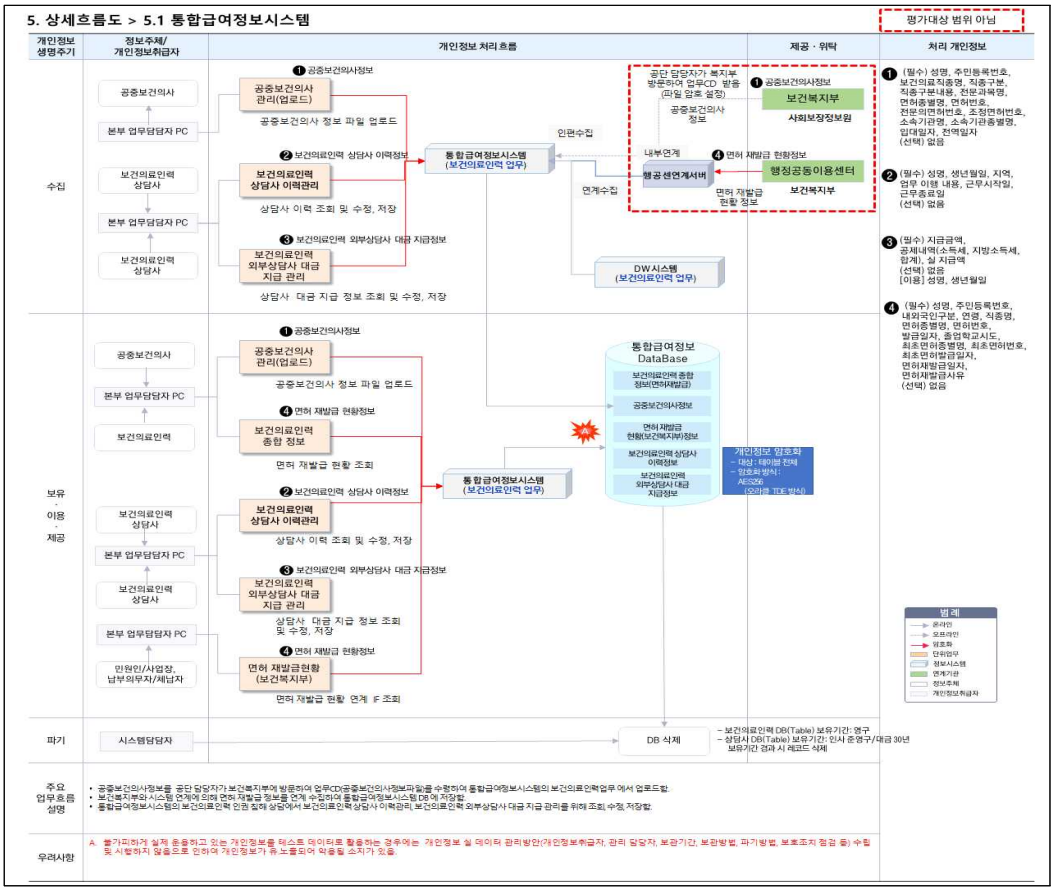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요약본

<table>
<tr><td colspan="2">공공기관 명</td><td colspan="6">국민건강보험공단</td></tr>
<tr><td colspan="2">평가기관</td><td>(주)한국전산감리원</td><td>평가기간</td><td>2026.5.4 ~
2026.8.7</td><td>평가예산</td><td colspan="2">■ 3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td></tr>
<tr><td rowspan="6">평가대상시스템 개요</td><td>시스템명</td><td colspan="3">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고도화)</td><td>시스템 구축 또는 변경 일정</td><td colspan="2">2025.12.12 ~
2026.10.17</td></tr>
<tr><td>추진개요 및 목적</td><td colspan="6">○ 시스템 구축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정
-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20개 직종 보건의료인력 250만 명의 분산된 데이터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에 통합·연계하여 구축완료
○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은 구축하였으나,
- 의료인력 현황 심층 분석 등 객관적·과학적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기능 고도화 필요성 대두</td></tr>
<tr><td rowspan="4">추진성격</td><td>대상여부</td><td colspan="2">5만명 이상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100만 이상 개인정보파일 처리, 기존에 영향평가를 받은 후 변경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무대상 요건에 해당됨</td><td rowspan="2">추진예산</td><td rowspan="2">1,802,000,000원
(부가세포함)</td></tr>
<tr><td>추진주체</td><td colspan="2">보건의료자원실
의료자원지원부</td></tr>
<tr><td>추진근거</td><td colspan="2">「보건의료인력지원법」제16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제17조(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td><td>추진유형</td><td>■ 변경(고도화)</td></tr>
<tr><td>신기술 유형</td><td colspan="4">-</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6">○ (심층분석)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 구축, 내부 분석시스템 개발, 의료인력 현황 통계 제공을 위한 외부 시각화 홈페이지 개발 등
○ (시각화) 지역별·성별 인력분포 등 대시보드(지도·차트 등) 구현
○ (인프라 보강) 분석 서버 및 신규내부시스템 구축용 S/W 등 설치</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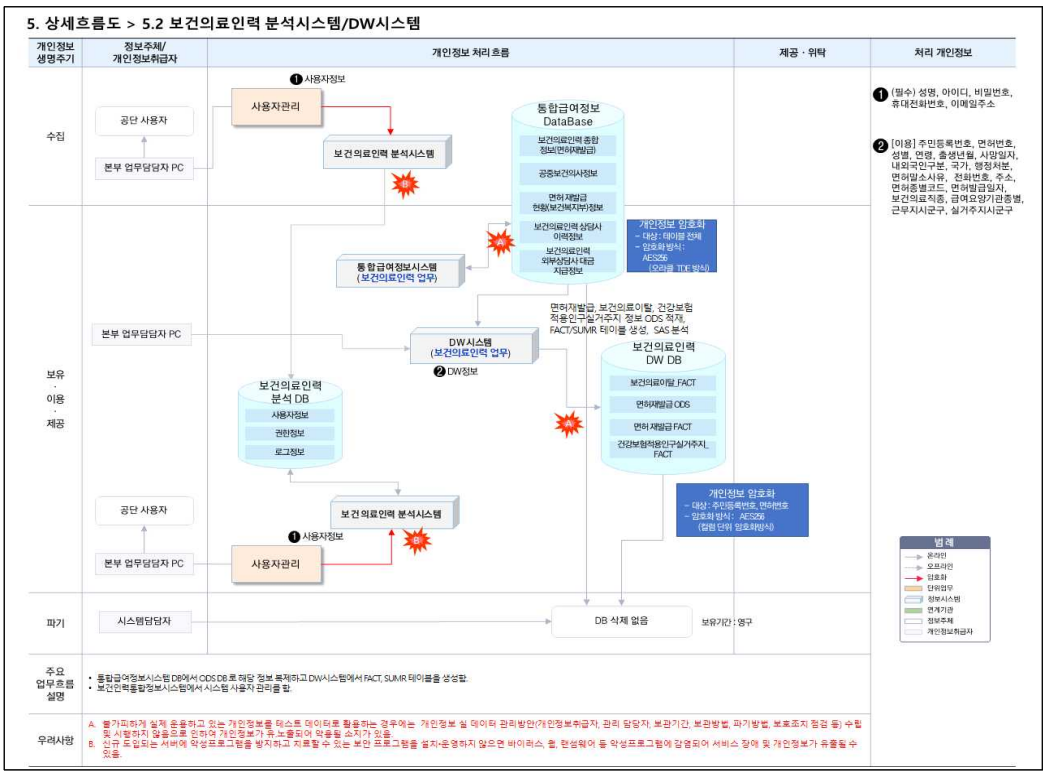
<table>
<tr><td></td><td>운용체계 변경내용 (변경인 경우)</td><td colspan="4">상동</td></tr>
<tr><td rowspan="2">개인 정보 파일 개요</td><td>파일명</td><td>정보주체 수</td><td>개인정보 항목</td><td>제3자 제공</td><td>개인정보 처리 목적</td></tr>
<tr><td>보건의료 인력 현황관리</td><td>2,500,000명</td><td>[필수항목]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행정처분, 면허번호, 국적, 합격자정보, 보건의료인력 근무이력 현황
[선택항목]
해당없음</td><td>-</td><td>보건의료인력 현황관리</td></tr>
<tr><td>개인정보 처리 흐름분석</td><td colspan="4">(개인정보 생명주기 요약)
1. 통합급여정보시스템(보건의료인력)
수집)
- 보건복지부와 행공망 연계에 의해 면허 정보 등을 연계 수집하여 통합급여정보 시스템 DB 에 적재함.
- 연계가 어려운 데이터(각 협회 자료)는 공단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에 방문하여 업무용CD를 통해 수신 후 시스템에 업로드함.
-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의 보건의료인력 인권 침해 상담에서 보건의료인력 상담사 이력관리, 보건의료인력 외부상담사 대금 지급 관리를 위해 조회, 수정, 저장함.
이용)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의 보건의료인력 인권 침해 상담에서 보건의료인력 상담사 이력관리, 보건의료인력 외부상담사 대금 지급 관리를 위해 조회함
파기)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일은 보유기간이 '영구'로 파기하지 않음.

2. 보건의료인력 분석시스템/DW시스템
수집) 통합급여정보시스템(보건의료인력)에서 연계 수집한 공중보건의사정보, 면허 재발급 정보 등을 내부 DW시스템으로 이관(ODS테이블)
이용)
- ODS테이블을 참조하여 FACT, SUMR 테이블을 생성함.
- 생성된 FACT, SUMR 테이블을 참조하여 통계 데이터를 분석시스템에서 시각화 내역 조회함.
- 보건인력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시스템 사용자 관리를 함.
파기) 분석시스템에는 개인정보가 없으며 통계 데이터로 파기하지 않음.</td></tr>
</table>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1) 통합급여정보시스템-보건의료인력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2) 보건의료인력 분석시스템/DW시스템



영향 평가 기준	평가기준 변경사항 및 사유	- 1장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은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통합징수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2026.1.5 ~ 2026.4.17)에서 본 영역 평가 수행 하였기에 생략함. - 5장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생체인식정보, 위치정보, 가명정보, 자동화된 결정, 인공지능(AI) 등 37개 항목은 특정 IT기술 활용과 무관하여 제외함.
	주요 평가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10.)』 및『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7호)를 반영하여 평가함.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분석·평가		1. (4.5.1)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고도화) 사업에서 신규로 도입되는 서버에 대해 서버 백신 설치 계획이 없음. 2. (4.8.1) 구축 수행사는 '개인정보 데이터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으나 구체적인 개인정보 실 데이터 관리방안(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담당자, 보관기간, 보관방법, 파기방법, 보호조치 점검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주요 위험요소에 따른 개선조치 방안	1. 신규 도입되는 서버에 바이러스, 웜,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2. 개인정보 실 데이터 관리방안(개인정보취급자, 관리 담당자, 보관기간, 보관방법, 파기방법, 보호조치 점검 등)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권장)
	위험요소에 따른 정보주체 인지사항	- 해당없음

평가결과	1. 대상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1장)는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2단계(고도화)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2026.5.4 ~ 2026.8.7)에서 본 영역 평가 수행하였기에 생략함. 2. 대상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2장)는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평가분야, 개인정보파일 관리 평가분야,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분야에서 대체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 3.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호조치(3장)는 25개 평가항목의 보유, 이용·제공, 파기 평가분야는 양호함. 4. 대상시스템의 기술적 보호조치(4장)는 42개 평가항목 중 이행 항목 36개, 부분이행 항목 2개, 해당없음 4개로 식별되었음. -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의 암호화, 물리적 접근방지,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처리구역 보호 평가분야는 양호하나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기타 기술적 보호조치 평가분야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됨. - 백신 설치 및 운영 (4.5.1) - 개발 환경 통제 (4.8.1) 5. 특정IT 기술 활용 시 보호조치 영역(5장)의 CCTV, AI 등은 대상시스템과 연관성이 없어 평가에서 제외하였음.